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포함 등〉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49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준호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8. 30.

다. 회 부 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

그러나 현행법상 사이버폭력은 따돌림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딥페이크 영상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국가의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에서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켜 그 폭력성을 명확히 하고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영상물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및 제16조의4).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상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하고,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의2. (생략)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u>따돌림</u> 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 ----- ----- ----- ----- <u>--따돌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제작·반포와</u> ----- ----- -----.
2. ~ 5. (생략)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u>편집물</u> ,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 ----- <u>편집물, 합성물, 가공물,</u> ----- ----- ----- -----

현행	개정안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 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 ② ~ ⑤ (현행과 같음)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함. 최근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되는 등 성범죄가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교육부는 매주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1일 기준 피해 교원은 33명, 피해 학생은 883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

구분	피해 신고(건)				수사 의뢰(건)				삭제지원 연계(건)	피해자 현황(명)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학생	교원	직원등
누적합계 (1.1.~11.01.)	552	17	238	297	467	17	209	241	247	920	883	33	4
1차조사 (8.27. 기준)	196	8	109	79	179	7	96	76	97	196	186	10	0
2차조사 (9.6. 기준)	238	4	70	164	171	4	55	112	87	421	402	17	2
3차조사 (9.13. 기준)	32	1	14	17	31	1	14	16	14	105	104	0	1
4차조사 (9.27. 기준)	38	3	16	19	36	1	16	19	20	111	107	4	0
5차조사 (10.4. 기준)	5	0	2	3	5	0	2	3	1	7	5	2	0
6차조사 (10.11. 기준)	7	1	4	2	10	4	4	2	11	10	10	0	0
7차조사 (10.18. 기준)	17	0	9	8	16	0	8	8	11	27	27	0	0
8차조사 (10.25. 기준)	9	0	7	2	9	0	7	2	4	24	24	0	0
9차조사 (11.01. 기준)	10	0	7	3	10	0	7	3	2	19	18	0	1

자료: 교육부

한편,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¹⁾,

동법 제2조제1의3호에서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제1항에서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현행법상 정의 규정에 따르면 딥페이크가 학교폭력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명확하게 추가하고, 딥페이크 영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영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가능케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가 사이버폭력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되

1)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면서 피해자들이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요청하거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상 규정으로도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의3호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현행법에 딥페이크가 사이버폭력에 포함된다면 해당 영상물의 삭제 지원 또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미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교육부는 동법 제16조의4에 근거하여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여성가족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

또한,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²⁾은 성적 허위영상물 삭제뿐만 아니라 피해자 식별이 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능한 신상정보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까지 포함하여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다만, 현행법상으로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며, 이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도 가능하다고 함.

문 의 처
02)6788-5184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